

휴대화물 (반송 요율표)

반송화물 요율 - 일반화물

(금액 단위 : 원)



구분	10kg 이하	30kg 이하	50kg 이하	70kg 이하	100kg 이하	200kg 이하	100kg 이하	200kg 이하
당일	11,300	13,500	14,700	17,000	19,200	28,200	36,000	45,000
3일	12,000	14,300	15,300	17,600	19,800	28,800	36,800	45,800
6일	12,600	14,900	16,100	18,300	20,600	29,600	37,400	46,400
9일	13,400	15,600	16,700	18,900	21,200	30,200	38,100	47,100
12일	14,000	16,200	17,400	19,700	21,900	30,900	38,700	47,700
15일	14,700	17,000	18,000	20,300	22,500	31,500	39,500	48,500
18일	15,300	17,600	18,600	20,900	23,100	32,100	40,100	49,100
21일	15,900	18,200	19,400	21,600	23,900	32,900	40,700	49,700
24일	16,700	18,900	20,000	22,200	24,500	33,500	41,400	50,400
27일	17,300	19,500	20,700	23,000	25,200	34,200	42,000	51,000
30일	18,000	20,300	21,300	23,600	25,800	34,800	42,800	51,800
30일초과시 3일 1기당	90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반송화물 요율 - 반송제한화물

(금액 단위 : 원)



구분	10kg 이하	30kg 이하	50kg 이하	70kg 이하	100kg 이하	200kg 이하	100kg 이하	200kg 이하
33일	18,600	20,900	21,900	24,200	26,400	35,400	43,400	52,400
36일	19,200	21,500	22,500	24,800	27,000	36,000	44,000	53,000
39일	19,800	22,100	23,100	25,400	27,600	36,600	44,600	53,600
42일	20,400	22,700	23,700	26,000	28,200	37,200	45,200	54,200
45일	21,000	23,300	24,300	26,600	28,800	37,800	45,800	54,800
48일	21,600	23,900	24,900	27,200	29,400	38,400	46,400	55,400
51일	22,200	24,500	25,500	27,800	30,000	39,000	47,000	56,000
54일	22,800	25,100	26,100	28,400	30,600	39,600	47,600	56,600
57일	23,400	25,700	26,700	29,000	31,200	40,200	48,200	57,200
60일	24,000	26,300	27,300	29,600	31,800	40,800	48,800	57,800
63일	24,600	26,900	27,900	30,200	32,400	41,400	49,400	58,400
63일초과시 3일 1기당	90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 대상화물 : 반송제한 대상자의 농축산물 및 식품류 이외의 화물
- 적용방법
- ▷ 반송제한 대상자의 반송제한 대상화물은 1개월 장치 후 반송 가능
- ▷ 반송제한 대상자의 반송제한 대상화물은 2개월 장치 후 체화 처리
- ▷ 반송제한 대상화물과 식품류 등의 혼합 반입 시 장치기간 2개월 적용
- 적용근거
- ▷ 관세청 특수통관 47300-326호(2003.6.18)
- ▷ 사업 제 257호(2003.6.23)
- 적용대상 : 전 세관지정장치장

별도 반송 요율

- 10kg 이하 유치품(농산물)에 한하여 5kg 이하와 10kg 이하로 세분한 별로 반송률 적용

- 농산물과 공산품 등의 혼합 반입시에도 동 요율 적용

(금액 단위 : 원)



구분	5kg 이하	5kg초과 ~ 10kg 이하
당일	3,500	7,000
3일	4,000	8,000
6일	4,300	8,400
9일	4,700	8,800
12일	5,000	9,300
15일	5,300	9,800
18일	5,600	10,200
21일	5,900	10,700
24일	6,300	11,200
27일	6,600	11,700
30일	7,000	12,100
30일초과시3일 1기당	900	900

- 적용대상 : 군산 · 인천 · 평택세관 지정장치장
- 승인근거 : 사업 제 170호(2005.7.13)
- 시행일 : 2005.7.20부터 별도 지시일까지 잠정 시행

양주 및 담배 반송물품 별도 징수



구분	5kg 이하	5kg초과 ~ 10kg 이하
양주류	3일까지 병당 5,000원	3일초과시 3일당 병당 1,000원
담배류	3일까지 갑당 200원, 보루당 2,000원	3일초과시 3일당 갑당 20원, 보루당 200원

- 적용방법 : 여행자가 반입한 품목 중 양주, 담배 이외의 기타 품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양주와 담배만 별도 발취하여 양주 및 담배 반송요율을 적용하고 기타품목은 현행 반송요율 적용
- 승인근거
- ▷ 인천세관 통관 47320-1327(2002.8.13)
- ▷ 평택세관 통관 47320-418(2002.9.18)
- 적용대상 : 인천 · 평택세관 지정장치장

- * 체화화물은 체화일수에 대한 10% 할증
- * 별도 실비징수 : 화물의 성격(기타화물 등)이나 장치장 여건상 별도의 포장 용기나 운반비가 소요될 시에는 세관장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